



직무 발명 규칙

규정번호	6-3-11
제정일자	2007.02.14
개정일자	2013.06.01
개정번호	Ver.4 총페이지 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산업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본 대학의 전임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본 대학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3.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4.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5. “특허”라 함은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6. “Know 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7. “실시보상”이라 함은 본 대학의 연구 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 및 Know-How등을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해당 교직원 등에 보상함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본 대학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외부발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외부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도 승계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이 제1항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관장)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기술연구소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제 2 장 신고 및 출원

제5조(발명의 신고)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2. 발명의 내용 설명서
3. 양도증

제6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산학협력단장은 신고된 발명을 심의하여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처장, 산업기술연구소장과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당해 발명의 직무발명 여부,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 직무발명의 국내·외 출원 여부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개폐 등을 자문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본 대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본 대학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이 발명자에게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출원) 산학협력단장은 제8조의 양도증을 받은 즉시 학교법인 동양미래대학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출원 등의 제한) 발명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그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특허출원, 등록 및 연차등록 비용) 본 대학 산학협력단이 제6조 제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 국내 및 해외 산업재산권의 비용은 다음 각 항을 따른다.

① 특허출원 비용은 변리사 수입료, 부가세, 관납료 및 수수료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리사 수입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 부가세는 변리사 수입료의 10%로 10만원까지 지원한다.
3. 관납료 및 수수료는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4. 우선 출원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특허등록 비용은 동양미래대학교가 아닌 공동출원인이 지불한다.

③ 연차등록료는 동양미래대학교가 아닌 공동출원인이 지불한다.

④ 6년차 연차등록 시점에서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허의 소유여부를 판단하여 특허 소유의 필요성이 없으면 공동출원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계속 특허 소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차등록비용의 일부를 동양미래대학교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① 본 대학은 연구 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 실시권의 허여 또는 그러한 연구수행과정 중 획득한 Know-How 등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실시보상금을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에게 지급한다.

1. 발명자가 출원 및 등록비를 자비 부담한 경우 기술료 수익금을 대학 30%, 발명자 70%의 비율로 배분한다.
2. 본 대학 산학협력단이 출원 및 등록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 기술료 수익금을 대학 80%, 발명자 20%의 비율로 배분한다.
3. 발명자가 출원비 또는 등록비 중 한 가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산학협력단이 부담한 경우 기술료 수익금을 대학 60%, 발명자 40%의 비율로 배분한다.
4. 특허가 발생하지 않는 연구용역을 계약하거나, 특허권 없는 know-how 또는 software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해 기술료 수입이 발생한 경우 대학 30%, 발명자 70%의 비율로 배분한다.
5. 외부 연구비 지원 기관의 지원 또는 계약 규정에 의해 출원 및 등록비를 부담한 경우는 별도의 계약 규정에 따른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13조(발명자의 지분) ①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또는 외부발명자가 있는 경우에 발명자 또는 외부 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가 없으면 각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해외특허출원 지원금에 대한 보상금의 처리)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외부기관에서 특허관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특허출원관련 비용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지원금을 발명자가 받은 경우에도 해당 비율만큼의 금액을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 또는 외부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6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방이나 위계에 의한 발명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협력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자유발명) 직무발명 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 등이 한 발명의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본 대학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승계, 보상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특허권의 권리존속여부) 본 대학은 본 규정 기타 개별계약에 의하여 대학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 등록 5년 후에 특허심의회에서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심사하여 특허권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 또는 포기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산업재산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기타의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 출원한 것과 특허권으로 등록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학장이 따로 규정을 두어 관리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